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60 발의연월일: 2021. 6. 22.

발 의 자: 김철민·고영인·권인숙

김민철 · 민형배 · 박상혁

서동용 • 안민석 • 유기홍

유동수 · 이병훈 · 이원욱

이정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, 화재 안전, 설계·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며,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, 범죄예방, 무장애, 생태, 친환경, 녹색, 교통정온화, 청정환기등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학교폐쇄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 지속되고, 학습결손과 격차의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학생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교내 감염예방 조치를 통한 학교의 등교일수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.

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, 교육시설을 디자인하는 경우 감염예방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 중 "환경"을 "감염예방, 환경"으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무장애"를 "감염예방, 무장애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	제10조(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
기준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정	기준 등) ①
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	
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	
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	
기준(이하 "안전·유지관리기준"	
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, 이를	
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	
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교육시설의 <u>환경</u> 및 재료 등	4 <u>감염예방, 환경</u>
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	
준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교육시설의 디자인) ①	제26조(교육시설의 디자인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	②
위한 공간구조, 범죄예방, <u>무장</u>	
<u>애</u> , 생태, 친환경, 녹색, 교통정	<u>감염예방, 무장애</u>
온화,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	
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	

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	
	<u>.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